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54호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5. ~ 2021. 10. 19.(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유)석준레저	164214-0000***	0178200274100004603	885,000	충남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2	(유)미광엔지니어링	164214-0000***	0178200274100004602	885,000	충남 금산군 금산읍 유림길
3	합자회사 구동소프트개발	150113-0008***	0178200274100003675	29,736,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103번길
4	(유)국제광고	131314-0001***	0178200274100003698	14,337,000	경기 평택시 통복시장2로
5	(합)탑글로벌	150113-0008***	0178200274100003703	29,736,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64번길
6	유한회사 미건	141214-0000***	0178200274100004826	36,676,800	강원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7	㈜올세븐	176011-0058***	0178200274100004844	17,841,6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18길2
8	㈜애니폰	180111-0839***	0178200274100004514	11,947,500	부산 수영구 연수로401번길
9	㈜티엔에스시	180111-0795***	0178200274100004515	10,743,900	부산 수영구 망미로7번길
10	㈜골드커머스	180111-0830***	0178200274100004513	13,275,000	부산 남구 황령대로
11	㈜유캔 (구. ㈜윈스토어)	170111-0462***	0178200274100004870	12,744,000	대구 남구 중앙대로 34길
12	㈜유토라인	176011-0070***	0178200274100004802	11,947,500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18길
13	㈜에이치피엔홀딩스	180111-0804***	0178200274100004503	11,947,500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14	㈜더폰	180111-0856***	0178200274100004445	8,186,720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5	(주)니카보카	174811-0066***	0178200274100004800	11,704,500	경북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16	(주)상아네트웍스	280211-0120***	0178200274100004795	11,947,500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7	(주)이엔씨	170111-0416***	0178200274100004793	13,275,000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서길
18	(주)제이투글로벌	170111-0357***	0178200274100003617	11,947,500	대구 동구 동부로26길
19	(주)비전하우징21	170111-0524***	0178200274100004785	11,947,500	대구 동구 동대구로
20	(주)삼배	230111-0197***	0178200274100004424	11,947,500	울산 중구 강북로
21	(주)에스지모바일	180111-0962***	0178200274100004479	13,275,000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117번길
22	(주)경상전기물류	170111-0269***	0178200274100004769	5,238,000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KCA빌딩)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

-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